

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8. 2. 20 선고 2017가단350 판결 [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]

전 문

원고 1. A

2. B

피고 1. C

2. D

3. E

4. F

5. G

6. H

7. I

변론 종결 2018. 1. 16.

판결 선고 2018. 2. 20.

주 문

1. 피고들은

가. 원고 A에게 별지 목록 제1, 2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/7 지분에 관하여

나. 원고 B에게 별지 목록 제3, 4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/7 지분에 관하여

각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1999. 1. 25. 접수 제1383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
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2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적용법조

가. 피고 C, D: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, 제194조)

나. 나머지 피고들 : 자백간주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, 제150조 제3항)

판사전진우

별지